

의안번호	2207446
의 퇴 인	한지아의원
회 답 일	2025. 1. 17.
추 계 번호	25C016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구축·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원, 2030년 15억 6,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62억 5,400만원(연평균 12억 5,100만원)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구축·운영	200	1,523	1,455	1,509	1,566	6,254	1,251

주: 동 추계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비용과 그에 따른 시스템 사업비 및 유지보수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향후 ISP 수립 후 실제 발생할 구축비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의5(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 자살유발정보 유통 차단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니터링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위탁할 수 있음(제4항) 그 밖에 모니터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9조의5(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개정안에 따라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라 함)를 설치 및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제시
- 개정안(안 제19조의5제4항)에서 모니터링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법 제12조의4¹⁾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하 추계에서는 업무 위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그에 필요한 인력 기준 및 운영비 등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준용하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구축

- 1) 제12조의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살예방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지원
 3. 제11조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지원
 4. 제11조의2에 따른 심리부검 지원
 5.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6.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7.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8. 자살예방 연구·개발
 9.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10.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업무 지원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두며,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⑧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은 현시점에 구체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라 모니터링센터는 센터장 1인과 전담인력 22인(기술관리팀 4인, 모니터링팀 16인, 행정팀 2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²⁾
- 다만,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상담 시스템 등 유사 프로그램들의 구축비용이 상이하여 기존 사례를 준용하기 곤란하고([표 2] 참조), 현시점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범위 등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 첫해에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이하 “ISP”) 수립 연구비를 책정하는 것으로 대신함

- 추계 첫해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위한 ISP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2년 차부터 시스템 개발비를 제외한 인건비 등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시스템 구축비용과 동일한 이유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유지보수비용도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표 2] 시스템 구축 개발 사례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금액
상담 시스템	'17년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SNS상담시스템 구축 개발비	5,800
	'20년 한국관광공사 1330 관광안내 문자채팅 상담시스템 구축 개발비	2,440
	'18년 청소년 SNS 상담서비스 '다들어줄게' 구축 개발비	4,000
AI	'22년 한국산업은행 인공지능 기반 기업금융 플랫폼 개발 및 구축	11,834
	교육학술정보원 차세대 사이버공격 탐지체계' 추가 개발비(구축 별도)	1,800

자료: 보건복지부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2)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구축 필요 근거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세부 구축방안 마련을 위해 2023년 연구용역(“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구축 마련을 위한 연구”)을 수행한 바 있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가 설치 및 운영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추계 1년차와 2년차 이후로 나누어 추계
 - (1년차)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위한 ISP 수립 연구비로 2억원 소요 가정
 -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정보화시스템 구축 전에 ISP 수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ISP 수립 연구 발주 및 관리는 기존 인력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
 - (2~5년차)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에 따른 비용 추계
 - (인건비) 센터장 1인과 전담인력 22인을 포함한 총 23인에 대한 12개월 인건비 12억 3,900만원³⁾이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운영비) 사무공간은 현행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유희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2년차에는 사무공간 구축비(4,000만원)와 자산취득비(8,000만원)를 포함한 1억 3,900만원, 3년차 이후에는 그 외의 운영비 1,900만원 가정⁴⁾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원, 2030년 15억 6,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62억 5,400만원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ISP 수립비용	200	-	-	-	-	200	40
인건비 및 운영비	-	1,523	1,455	1,509	1,566	6,054	1,211
합 계	200	1,523	1,455	1,509	1,566	6,254	1,251

주: 동 추계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비용과 그에 따른 시스템 사업비 및 유지보수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향후 ISP 수립 후 실제 발생할 구축비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전담인력 인건비는 정신건강전문요원 경력자 3호봉 기준이며, 기관부담금 포함 가정

4) 시스템 운영 사업비와 시스템 유지보수비

IV. 부대의견

- 동 추계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비용과 그에 따른 시스템 사업비 및 유지보수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향후 ISP 수립 후 실제 발생할 구축비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